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515 발의연월일: 2021. 1. 20.

발 의 자:설 훈·김영주·김진표

서영석 · 신영대 · 유정주

윤재갑 • 이규민 • 전용기

전혜숙·조승래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 및 고소득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연예인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병역 이행과정을 관리하 기 위하여 이들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체육선수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로 한정하고 있어, 국가대표 출신이라 하더라도 해외에서 활동하는 선수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제도 운영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고소득자와 연예인 명단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절차와 관련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제도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국가대표선수를 관리대상으로 추가하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 대한 명단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실효성을 높 이고 자율적인 병역 의무 이행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77조의4). 법률 제 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4제1항제2호 중 "선수"를 "선수 및 같은 조 제4의2호에 따른 국가대표선수와 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명단"을 "및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명단"으로, "대중문화예술사업자"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 국세청장"을 "및 병역의무자와 그 부모의 주민등록 정보화자료: 국세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에서"를 "제4항까지에서"로 한다.

③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과 새로이 계약을 맺거나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그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7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	제77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
리 등)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리 등) ①
병적에 편입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무청장 또	
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이 병역준비역에 편	
입된 때부터 현역·보충역·대체	
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	
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	
지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영 후	
제65조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	
경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병	
적 관리 기관의 장으로부터 병	
적 및 관련 자료를 송부 받아	
관리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	2
4호에 따른 <u>선수</u>	<u>선수 및 같은 조</u>
	제4의2호에 따른 국가대표선
	수와 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
장은 제1항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해
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
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 2. (생략)
-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대중 문화예술인 <u>명단</u>: 「대중문화 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8 호에 따른 <u>대중문화예술사업</u> <u>자</u>
- 4.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 명단: 국세청장

<신 설>

2
1. • 2. (현행과 같음)
3
<u>및</u> 대중문화예술
<u>사업자 명단</u>
<u>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u>
문화체육관광부장관
4
<u>및</u> 병역의무자
와 그 부모의 주민등록 정보
화자료: 국세청장 및 행정안
전부장관
③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제1
항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
인과 새로이 계약을 맺거나 계
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병무청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u>제3항까지에서</u> 규정한 사항 외에 병적의 관리,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에게 그 변동사항을 통보하
<u> 여야 한다.</u>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u>⑤</u> <u>제4항까지에서</u>